

「건축구조기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.

2014년 7월 4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축구조기준」 일부 개정 고시

「건축구조기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 <표 0304.2.2> 기본지상적설하중 를 <표 0304.2.1> 기본지상적설하중  $S_g$ 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상적설하중(kN/m <sup>2</sup> ) |
| 서울, 수원, 춘천, 서산, 청주, 대전, 추풍령, 포항, 군산, 대구, 전주, 울산, 광주, 부산, 통영, 목포, 여수, 제주, 서귀포, 진주, 이천 | 0.5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정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65                       |
| 인천, <a href="#">울진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8                        |
| <a href="#">동 해</a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a href="#">1.6</a>        |
| 속 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.0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강 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.0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울릉도, 대관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.0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, 산지 등 국지적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기본 지상 적설하중 (건축구조기준 표0304.2.1)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음

제3장 0304.7.1. 비로 인한 추가하중을 “지상적설하중이 1.0 kN/m<sup>2</sup>이하인

지역에서는 지붕의 경사각이  $W/15$ (  $W$ 는 처마에서 용마루까지의 수평거리, m)이하인 모든 지붕에 눈 위의 비로 인한 하중 0.25 kN/m<sup>2</sup>을 추가하여야 한다. 이 추가하중은 평지붕적설하중 또는 경사지붕적설하중에 적용하여야 하며 최소적설하중, 부분재하, 국부적설하중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.”로 개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(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「건축법」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